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등).
- 물품등¹⁾의 위해정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대한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1)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 4. (생략)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 8. (생략)

II. 검토의견

1. 일부 문장을 보완할 필요(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2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 제도가 사실상 지정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²⁾.

다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에 대해 안 제20조의2 중 제2항은 “지정 받으려는 자”로, 제3항은 “지정받은 자”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0조의2제5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고 기존 현행법에서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정받은 자”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생략)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개정안과 같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하여, 인증이란 ‘제품등이 국가·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기존 명칭이 소비자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2024년 국조실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u>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u>(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u> ③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u>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②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u>----- ----- ----- -----. ③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u>----- ----- -----지정----- -----. ⑤ ----- -----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u>----- ----- -----. (이하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⑤ ----- ----- ----- ----- -----<u>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u>----- ----- -----. (이하 생략)
---	---	--

2. 소송지원 관련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안 제68조의5)

안 제68조의5는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안 제68조의5제1항은 소송지원의 내용에 대해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의 방법 등으로” 예시를 두고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업무인 소송대리나 소장작성³⁾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려는 입법취지⁴⁾, 소송지원 시 변호인 선임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⁵⁾ 및 현행 운영지침으로 원장이 변호사를

3)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개정안(대안)은 정무위원회 심사에서 3개의 개정안(김병기의원안, 김상훈의원안, 김승원의원안)이 통합·조정된 것으로, 소송대리나 소장작성 지원 등 소비자 소송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하려는 입법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2025. 12. 16.) 회의록 등의 자료를 참조 바람.

5)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위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6),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와 같이 문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경미한 자구 정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 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의 방 법 등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 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 항에 따라 통지받 은 분쟁조정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 ----- ----- ----- ----- ----- 위촉 변호 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 ----- ----- 1. ----- ----- -----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1조(소송지원변호인단의 구성 등) ② 소송지원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의 방식으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u>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u>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의 기준, 소송지원의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 사건 2. ----- ----- ----- ----- ----- ----- --- 사건 ② ----- 대상 및 절차----- ----- ----- ----- ----- --.
--	--	--

3. 부칙의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부칙 제2조)

부칙 제2조는 안 제58조제2항에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따른 적용대상은 처리기간 연장 사유의 “통지”와 관련된 것임.

그런데, 안 제58조제2항은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후단에 신설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던 통지기간 연장의 내용을 제2항의 전단으로 이동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례의 대상이 신설되는 연장통지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58조제2항“후단”에 대한 적용례임 명시하고, 그밖의 일부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제2조(기간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후단의 ----- 처리기간을-----.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